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288호 2021. 3. 8.(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1-37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03월 08일

예 천 군 수

1. 개정이유

상위 법령(「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개정 :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주소정보 사용 확대에 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 및 비용 산정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 라.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 비용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 마.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 바. 주소정보위원회에 대한 사항 (안 제6조 ~ 제12조)
- 사.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대한 사항 (안 제13조)
- 아.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추진에 대한 사항 (안 제14조)
- 자. 주소정보 업무 위탁 등에 대한 사항 (안 제15조)
- 차. 토지 등의 출입증에 대한 사항 (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8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예천군 종합민원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의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 전화 : 054-650-6924, 팩스 : 054-650-6149
- 전자우편 : minjee91@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의견	비고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상위 법령(「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개정 :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나. 목적, 주소정보 사용 확대에 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 및 비용 산정에 대한 사항 (안 제3조)

라.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 비용에 대한 사항 (안 제4조)

마.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대한 사항 (안 제5조)

바. 주소정보위원회에 대한 사항 (안 제6조 ~ 제12조)

사.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대한 사항 (안 제13조)

아.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추진에 대한 사항 (안 제14조)

자. 주소정보 업무 위탁 등에 대한 사항 (안 제15조)

차. 토지 등의 출입증에 대한 사항 (안 제16조)

3. 개정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명주소법」(법률 제17574호, 2021. 6. 9. 시행)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기획감사실 의뢰 예정

마. 입법예고 : 3월 중 입법예고 실시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평가 : 주민복지실 의뢰 예정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예천군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도

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예천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예천군이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예천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예천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예천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수건, 물티슈, 칫솔세트, 손톱깎이세트, 볼펜, 보조배터리, 우산, USB, 물병, 머그컵, 티슈, 수첩, 부채, 기타 물품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천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둔 예천군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둔 예천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앞 쪽)

제 호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사 진

3cm×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
로 뒤 그림 없이 6개
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예 천 군

60mm×90mm [백상지 150g/m²]

(색상: 연하늘색)

(뒤 쪽)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소속/직급(직위):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 . . .부터 . . .까지

위 사람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5조 및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토지·건물등·시설물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천 군 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주우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토지·건물등·시설물 출입증 발급 대장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²]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 합 민 원 과	
연 락 처	650-6924